

창원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0가단111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1. 주식회사 A

2. 미합중국인 B

3. C단체

변론 종결 2022. 12. 13.

판결 선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미합중국인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5091/7537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단체와 D 사이에 2019. 10.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단체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10. 22. 접수 제1542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6. 7.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1	2013. 6. 7.	192,000,000	2014. 6. 5.	일반자금대출	제1신용보증약정
2	2013. 6. 7.	170,000,000	(2020. 5. 29. 로 연장)	일반자금대출	제2신용보증약정

2) 2019. 10. 22.경 D이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D을 대위하여 2019. 12. 13. E은행에 아래와 같이 271,739,937원을 변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지급금 736,673원이 소요되었다.

1	제1신용보증약정	192,000,000	2,338,244	194,338,244
2	제2신용보증약정	76,500,000	901,693	77,401,693
합계	271,739,937			

3) 원고는 2019. 12. 13. 1,730,160원을 회수하여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나. D과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의 매매예약

1) D은 2019. 10.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9. 10. 17.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9. 10. 15. 피고 미합중국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3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9. 10. 1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 C단체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D은 2019. 10. 21. 피고 C단체(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4 목록 부동산 중 25091/75372 지분(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10. 22.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의 무자력

이 사건 1, 2 각 매매예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9. 10. 15.과 2019. 10. 21. 현재 D의 재산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1 부동산	81,268,440	308,960,000	원고	270,746,450	672,215,790
2	이 사건 2 부동산	253,903,160	E은행	61,500,000		
3	이 사건 3 부동산	79,731,109	F조합	39,969,340		
4	이 사건 4 부동산	12,467,115	191,642,589	중소기업은행	300,000,000	
5	김해시 G 답 979㎡ 중 1/2 지분	219,388,000				
합계	646,757,824	146,155,235				
합 =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가액 - 308,960,000) + 이 사건 4 부동산 가액 + (G 토지 가액 - 191,642,589)						

1) H조합이 대구지방법원(I,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21. 5.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2. 5. 18., 이 사건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2. 6. 16. 각 말소되었다.

2) 원고는 2022. 6. 2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 청구금액 353,335,91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7. 14. 피고 회사에게 58,875,895원, 피고 B에게 20,261,581원이 각 배당되었고, 원고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9705호)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조합, E은행, F조합,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D은 이 사건 1, 2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7일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후인 2019. 10. 2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원고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다. 결국 이 사건 1, 2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1, 2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D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 각 매매예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146,155,235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 672,215,7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 2 각 매매예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3)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피고 회사, 피고 B에게 에게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2 매매예약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D은 이 사건 1, 3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B은 건축비용 등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2 부동산 신축공사를 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였는데, 건축물을 완공한 후 D이 2018.

8.경 동업 탈퇴를 위하여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2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사해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 피고 B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D과 피고 B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종중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종중은, 이 사건 4 부동산은 피고 종중이 1937년경 매수한 피고 종중의 소유로 종중의 선산인데 종중원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참조).

피고 종중은, 선조의 분묘 사진, 이 사건 증여계약 7일 전인 2019. 10. 14. 대표를 선임하고 이 사건 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 피고 종중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4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1)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종중은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윤아

별지